2015 아트캠페인 바람난 미술 “55”
부스 창작을 위한 협약서

(재)서울문화재단(대표 조선희, 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과 작가____________(이하 “작가”이라 한다)은 상호 신뢰 하에 계약의 내용을 준수하고 다음과 같이 과업 수행에 대한 본 계약을 체결합니다.

제1조(계약의 목적) 본 계약은 “재단”이 2015 아트캠페인 바람난 미술“55”의 전시에 대해 작가별 부스 창작을 진행함에 있어, “재단”의 지원사항 및 “작가”의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하여 상호간의 의무 및 권한을 명백히 하는데 있습니다.

제2조(과업내용) “작가”의 계약 기간 및 과업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.

1. 계약기간 : 2015년 11월 17일(화) ~ 11월 18일(수)
   ※ 필요에 따라 전시기간(11.19(목) ~ 11.23(월))동안 추가 작업 가능
2. 과업내용
   - “작가”는 “재단”에서 제공하는 부스를 기반으로 공간을 조성 및 창작합니다.
   - “작가”는 “재단”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된 시간, 장소에서 작업을 진행합니다.

제3조(용역비지급) “재단”이 지급해야 하는 “작가”의 과업수행에 대한 지급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.

1. “재단”은 “작가”의 과업결과물에 근거하여 과업종료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200,000원을 “작가”의 은행계좌로 입금합니다.
2. “재단”은 “작가”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대한 법정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.

제4조(상호의무, 책임 등) “재단”과 “작가”은 상호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.

1. “작가”는 “재단”의 계획에 맞게 작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의하여 과업을 성실히 진행합니다.
2. “재단”은 “작가”의 과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적극 지원합니다.

제5조(권리양도) 행사기간 동안 촬영하는 영상 및 사진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“재단”이 가집니다.

제6조(계약의 해지) “재단”은 “작가”가 본 계약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을 경우 “작가”의 동의 없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.

제7조(계약의 효력) 이 계약서의 효력은 “재단”과 “작가”가 상호 날인한 날부터 발생하고 계약사항의 이행완료시까지 효력이 있으며,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“재단”과 “작가”가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합니다.

2015.　.

[“재단”]
주　　소 :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
사업자등록번호 : 201-82-04361
(재)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: 조 선 희 (인)

[“작가”]
주　　소 :
주민번호 :
성　　명 :　　　　　　(인)